

『법학논총』 논문 투고 규정

제정: 2006. 3. 18
개정: 2007. 10. 5
개정: 2008. 11. 5
개정: 2012. 12. 20
개정: 2015. 10. 1
개정: 2016. 2. 1
개정: 2019. 11. 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법학논총』에 게재 할 논문의 작성요령 및 게재신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공저의 제2저자 및 제3자 등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으로서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는 『법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1. 연구소 학술행사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 및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자
2.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의 교원 및 법학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3. 초빙연구원이거나 이었던 자
4. 법률분야의 실무종사자
5. 대학원생으로서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
6.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5.10.1.>

② 동일 작성자의 논문을 『법학논총』에 2회 연속하여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또는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③ 『법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은 법학 전문 학술지에 게재될 수준의 법학 관련 연구논문 또는 판례평석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1.>

제3조 (논문의 제출) ① 『법학논총』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5.>

② 투고 원고는 『법학논총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및 영문 제목,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서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투고 원고는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dkulawstudy.jams.or.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④ (삭제) <개정 2016.2.1.>

- 제4조 (논문의 형식)** ① 논문은 연구논문, 판례논문, 학술발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제출한다.
- ②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필자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이동전화),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300 매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형식은 별도로 정한 논문발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논문접수) ①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편집 간사가 담당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장 명의로 논문게재예정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원고가 『법학논총 원고 작성 요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편집간사는 그 원고의 접수를 취소하거나 원고의 작성자에게 수정하여 재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6조 (논문게재안내) 『법학논총』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형식에 대한 안내문을 실는다.

제7조(논문의 이용허락) 논문제출자는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법학논총』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복제, 출판, 공중전송, 배포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

제8조(심사료, 게재료) 『법학논총』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가 원고를 제출할 때 연구소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출된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때에는 연구소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부칙[2006.3.18]

이 규정은 200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5]

이 규정은 200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2]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